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2021.12.1.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근 평균 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의 운임을 조정한 안전운임 수정안이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054호, 2021. 4. 13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1년 8월 16일부터 '21년 11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 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 [별표 3] 부산신항 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1년 12월 1일부터**로 변경

3. 관계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

4. 기타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1. 행정예고문(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2] 2.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안

| Contact



안근용 차장

T 051-462-8278
E kyahn@esein.co.kr



전소연 팀장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